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고 제2021-014

2021년도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양성
「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」사업 지원기업 선정 수정공고

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을 통해 소재・부품・장비 분야 중견기업 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을 지원하여 전문인력 수급 지원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「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」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중견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4일
한국중견기업연합회

1. 사업목적

○ 소재・부품・장비 분야 중견기업에 공공연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을 지원함으로써,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수급 지원 및 혁신역량 제고

2. 관련법령 및 규정

□ 관련법령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,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(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)

□ 공통규정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3. 사업내용

□ 목적

○ 공공연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공공연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여 소재・부품・장비 분야 중견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지원

□ 신청자격

○ 지원기업 : 소재・부품・장비 분야 중견기업 (으뜸기업, 전문기업 포함)

* 으뜸기업, 전문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

※ 소재·부품·장비 :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업종
※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기업
※ 으뜸기업(특화선도기업), 전문기업 : 「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근거한 기업

□ 지원내용

○ 파견 대상 : 공공연 재직인력 및 퇴직 후 공공연 재고용 인력

* 파견 연구인력은 반드시 공공연 소속이어야 함

※ 공공연구기관 : 한국화학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FITI시험연구원, 다이텍연구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섬유소재연구원, 한국신발피혁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한국재료연구원, 포항산업과학연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고등기술연구원,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한국광기술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자동차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건설기계부품연구원, 대구기계부품연구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로봇산업진흥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
○ 지원 기간 : 최대 2년

○ 지원 인원 : 기업당 1명

* 융·복합 기술 개발 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 으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

※ 융·복합 기술 개발 기업 : 연구개발 수행 시 2가지 이상의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2개 공공연 연구인력이 각각 필요한 기업
※ 으뜸기업(특화선도기업) : 「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근거한 기업

○ 지원금액 : 파견인력 소속 공공연 기준 인건비의 50% (3천만원 한도)

- 법정부담금(4대 보험, 퇴직금) 및 연봉 외 급여는 지원금에 포함

* 법정부담금 및 연봉 외 급여는 파견 공공연 기준에 따름

- 잔여 인건비는 지원기업에서 지급

□ 지원조건

○ 파견인력에 생산성・향상 품질 향상, R&D, 신사업 기획, 기술사업화, 디지털 전환, 기타(대내외 표준・인증, 친환경 분야 등) 등 기업 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업무 부여

[표] 지원 가능 업무 예시

구분	내용
생산성·품질 향상	· 생산설비 운영, 생산공정 개선, 품질 개선 등
R&D	· 연구 및 기술 기획·개발·수행 등
신사업 기획	· 주력업종 고도화, 신사업 기획·발굴, 사업재편 등
기술사업화	· 보유기술 사업화, 특허 출원, 판로 확보·개척, 대-중견-중소기업 제휴 등
디지털 전환	· 생산성 향상, R&D, 신사업 기획, 기술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획·로드맵 수립·실행 등
기타	· 대내외 표준·인증, 친환경 분야 등

4. 신청방법

□ **신청기간** : ‘21년 3월 4일(목) ~ 12월 31일(금) (*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)

□ **진행절차**

①신청.접수	②서면심사	③지원기업 선정	④인력 추천·매칭	⑤현장심사	⑥협약체결 및 인력 파견
신청기업 → 한국중견기업연합회	한국중견기업연합회	한국중견기업연합회	공공연 - 한국중견기업연합회 - 선정기업	선정기업- 파견후보인력	한국중견기업연합회 -공공연·지원기업

□ **신청접수**

○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(www.fomek.or.kr) 상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파일 신청양식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

→ 사업 담당자 이메일(kyn0401@fomek.or.kr)로 서류 제출

○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,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

5. 선정방법

□ **평가방법**

○ (서면심사) 기업지표(성장성, 안정성, 일자리평가 등), 적합성 지표(프로젝트 적합성·구체성, 전문인력 활용성·효과성, 기대효과 등), 가산점 등

- (선정기준) 서면심사 결과 기업지표(50점)+적합성 지표(50점) 합산 70점 이상인 기업

기업지표 (50점)	성장성	안정성	일자리평가
	20점	20점	10점
적합성 지표 (50점)	**프로젝트 적합성·구체성**	**전문인력 활용성·효과성**	**기대효과**
	20점	20점	10점

* 가산점 별도 부여(최대 4점) (´우대가점´ 참조)

○ (현장심사) 서면심사 기준을 충족한 기업 대상 공공연 연구인력 매칭 및 지원기업 현장심사 후 최종 선정·파견

□ **우대가점** (각 2점, 최대 4점)

○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·으뜸기업

○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

6. 제출서류

구분	번호	제출서류	수량
공통 서류	1	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 신청서 (서식1)	1부
	2	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 사업 수행계획서 (서식2)	1부
	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및 청렴 서약서 (서식3)	1부
	4	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
	5	법인등기부등본	1부
	6	최근 3개년도('18~'20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※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'표준재무제표증명' 또는 '재무제표 확인'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	1부
	7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귀속연월 : '18.12, '19.12, '20.12 세무서 발행본) ※ 종사자 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	1부
	8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(국세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, (지방세) 정부24	1부
	9	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(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) ※ 2021년도 발급 기준(유효기간 : 2021.4.1.~2022.3.31)	1부
해당 시	10	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	각 1부

*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개별파일로 저장하여 제출(파일명 앞에 반드시 번호 부여)

**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7.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

○ 중견기업 중 소재・부품・장비 산업 분야가 아닌 중견기업

○ 신청 기업이 아래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
○ 기업의 부도

○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○ 신청기업, 대표자,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
○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○ 파산.회생절차.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○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경우
(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)

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

○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○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8. 문의

○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강예나 선임

Tel : 02-3275-2219, Email : kyn0401@fomek.or.kr

별첨 참여 공공연구기관 명단

순번	기관분류	기관명	순번	기관분류	기관명
1	기초소재	**한국화학연구원**	19	모듈·부품	**한국자동차연구원**
2		한국과학기술연구원	20		한국생산기술연구원
3		한국표준과학연구원	21		건설기계부품연구원
4		FITI시험연구원	22		대구기계부품연구원
5		다이텍연구원	23		한국산업기술시험원
6	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24	시스템·장비	**한국기계연구원**
7		한국섬유소재연구원	25		한국로봇산업진흥원
8		한국신발피혁연구원	26		한국원자력연구원
9	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27		한국전기연구원
10	응용소재	**한국재료연구원**	28		한국항공우주연구원
11		포항산업과학연구원	29		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12		한국세라믹기술원	30	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13		한국지질자원연구원	31		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14		고등기술연구원	*** 5대 분야 대표 연구기관**		
15	전자부품	**한국전자기술연구원**			
16		한국광기술원			
17		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			
18		한국전자통신연구원			